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以旅費支給에關於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16↑

提出年月日: 1992. 10. .

提 出 者:教 育 監

1. 提案理由

地方自治法施行令의 改正('92. 9. 17. 大統領令 第13727號)으로 敎育委員에게 支給하는 旅費의 金額과 支給方法을 一部 變更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敎育委員에게 지급하는 旅費支給基準額을 調整함(案 別表1)
- 나. 委員會 所在地內에 出席 및 旅行(同一特別市・直轄市・市 또는 郡內에서의 出席 및 旅行을 말한다)이나 出席 및 旅行距離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現地交通費만 支給하도록 하였던 것을 食費까지 支給할 수 있도록 함(案 第8條).
- 다. 從前에는 旅費支給對象地域을 特地, 甲地 및 乙地의 3個 地域으로 區分하여 旅費를 支結하였으나, 이를 "甲地"(一般 市 以上), "乙地"("甲地"以外의 地域)로 縮小區分하여 支給토록 함(案 別表1)
- 3. 參考法令: "別添"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교육위훤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소재지내 및 12킬로미터 미만 거리의 출장시의 여비) ① 위원회소재지내 및 12킬로미터 미만 거리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에 의한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위원회소재지내"라 함은 대전직할시내를 말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위원회사무실소재지내출장시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 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구분	운임	운임	운임	운임	(1일당)	(1야당)	(1일당)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 5,000 율지 4,500	갑지 17,000 율지 15,000	갑지 11,000 율지 9,500	800
위원	1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율지 4,500	갑지 17,000 울지 15,000	갑지 11,000 율지 9,500	800

-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시지역으로, "을지" 는 "갑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배조 (위4 에서의 1 ② 제1학	출장 에 있≎	소객지내 시는 별3 회사무실	에서의 1 E 3에 의 소비자	한 여 내에서	비를 지급 비를 장당 이	한다. 라 함은 #	ት무실 소재자내 최건적합시내에서	네 및 12 및	로 이러 산을 지금	미만 거 ?한다.	리의 중	왕이 있	어서는 '	별포1여	의한 여보	위원회소 1중 변지
五年1 (祖美 1)	-1-1 -1 -1				47초 세1 ⁴	상 준현)	단위 웹)	(祖王 1)					* 4	1학 중인)	비: 원)
	¥5.	ા. તથા ય	공 사물		현지 속	*	하 식 박료	지급 기준액	월도	선박	47	자봉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7 2		ર િય ક	વા .	임 (I		•	설) ((일당)	₹₽	£ 9	운입	분임	운임		(1야당)	(1일달)	(1일당)
의 장 부 의 1	1등급 발	2동급 구 청약	ાં મુ	<u>ا</u> م	.500 16 감색 .500 15	목적 복 .000 L0.50 합지 갑 .000 10.00 음지 옵 .000 9.00	<u>지</u> 800 전 800 진	의장	183	2종광	격역	경액	ê 지	17,000	11,000 불조	200
위원	1중급:	 2등급 : 정액	N	ાચ	500 16 간지 500 15 문지	목적 목 ,000 10,5 강재 강 ,000 10,0 물리 물 ,500 9,0	<u>00</u> 과 800 진	##	193	2봉급 경액	경역	স্থ	₹ N	17,000	11,000 + 2	800
41.45	안산시 시 특3	월소제지 구리시 E시 : 여수	원주시 : 시 : 나무	장롱^	·숙호시 - 이시 - 포	- 충주시 당시 : 영천	의정부시 이리시 군산 시 다산시 L 한다.		<u> </u> 실모운 9	 일구분표	₹ 1 ₩	20 A	<u>1</u>	1일요급(14), 24	 - 공은 시	마음호 보 음 때에는
	지'는 5 안산시 시 목3 출산시 2. 자동차시 로 바피 3. 철도운 4 프를 계 는 철모	도월소제지 구리시 : 여수 도시 : 여수 : 전쿠시 : 단일 및 및 : 할인이 내구분표등	원주시 시: 나무 서귀로서 작은 입자 가능한 1등 급용 보운 경우	장용시 보. * 보. * 내온 경우에 ! 새바	· 속호시 2미시· 포 용지'는 : 교통부장' 는 <u>및인</u> 요 음호 목성	충주시 당시 영천 기타지역으: 합의 인 의 급을 제공(이며, 당해	이리시 군산 시 다산시 L 한다. 요공을 기준으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1일요급(14), 24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至 3)	지'는 5 안산시 시 등3 출산시 2. 자동차시 로 바퍼 3. 철도운* 프롭 계 는 철도	단청소재지 구리시 : 전구시 : 연수 전구시 : 단입 및 및 및 합인이 입구분표등 중합 수 문입을 지	원주시 : 나무 시 : 나무 서귀로시 구운 입자 가능한 : [등급년 보울 경우 급한다.	장용/ 보. 보. 내온 경우에 서바	·속호시 -여시·포 용제"는 : 교통부장" 는 <u>별인으</u> 음호 독실 그 노선의	충주시 당시 영천 기타지역으: 합의 인 의 급을 제공(이며, 당해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로 한다. 요금을 가운으 만다. 철도운입구문 중급에 해당하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u>(₩≅ 3</u>)	지'는 5 안산시 시 등3 출산시 2 자동차니 로 바되 3 철도운 5 표를 계 는 철도	단청소재지 구리시 : 전구시 : 연수 전구시 : 단입 및 및 및 합인이 입구분표등 중합 수 문입을 지	원주시 : 나에 시 : 나에 서워포시 중문 입기 가능한 : 1등급은 보급 경기 급한다.	장용/ 보. 보. 내온 경우에 서바	·속호시 -여시·포 용제"는 : 교통부장" 는 <u>별인으</u> 음호 독실 그 노선의	중주시 당시 영천 기타지역으로 당의 인 의 당을 제공적 이며, 당해 열차 라고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B 한다. 요광물 기준으 한다. 철도운입구분 물급에 해당하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至 3)	지 는 5 안상시 신 특3 출산시 2. 자동하니 공 등 3 집 월도운 표를 제 는 월도	단청소재자 구리시 : E시 : 여수 전주시 : 단일 및 및 및 할인이 입구분표등 용할 수 문입을 자	현주시 시 나무 사귀로서 무운 함께 가능한 기능한다.	장용/ 보. 보. 내온 경우에 서바	축호시 구미시 포 물째"는 : 교통부장: 는 발인으 글로 무선의 지급기를	용주시 당시 영천 기타지역으로 반의 인 허 - 공급 이며, 당해 웹차 최고 또(제8조 제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및 한다 요금을 기준으 한다. 월드물입구분 중국에 해당하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至 3)	지 는 5 안산시 시 등3 한산시 시 등3 한산시 시 등3 한산시 시 등3 한산시 시 등3 한사의 지 철도운약 프를 취임하다 지 않는 12 일로 12	단청소세지 구리시 : E시 : 여수 전주시 : 단입 및 및 및 할인이 입구문표등 음발 수 문입을 지 실 소매자	원주시 시 나무 서위포시 중문입기 가능한 (등급원 급합다. 1 중장시 리	장용/ 보. 보. 내온 경우에 서바	· 속호시	중주시 행신 1 행진 1 행진 1 행진 1 1 1 1 1 1 1 1 1 1 1 1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L 한다. 요금을 기존으 한다. 설도운임구분 유금에 해당하 ((안 건먼)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至 3)	지 는 5 안산시 시 등3 출산기 2 자동차 로 하파 로 하파 로 한 월도 는 월도 1 전회사무 여 12 달로 8 달로 8 달로 8 달로 8 달로 8 달로 8 달로 8 달로 8	단청소세지 구리시 : 조시 : 여수 전우자, 단일 및 및 , 할인이 내구분표명 등할 수 급입을 지 내 거 . 이터 이십 . 이터 이십	현주시 시 나무 서워포시 중문입기 가능한 1등공원 병급 경우 공한다.	장용/ 보. 보. 내온 경우에 서바	축소시	중주시 행신 1 행진 1 행진 1 행진 1 1 1 1 1 1 1 1 1 1 1 1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토 한다. 로급을 기존으 한다. 설도운입구분 등급에 해당하 (11당 전인) 역 건녕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41 3)	지는 5 안산시 시 등 3 산산시 2 자동차 로 바 파 3 3 월도울 여 는 월모 12 일로 12 일로 8 일로 2 일로 2 일로 2 일로 2 일로 2 일로 2 일로 2 일로 2	단청소에지 구락시 무리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변주시 시 나서 기계 시 가입 기계	장동/ 시 (나 속호시	중무시 합시 설천 기타자 예요.9 단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인 의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L 한다 요금을 기준으 한다 1 월모운임구분 (1상 전선) 역 전역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41 3)	지는 5 안산시 시 등3 출산시 2 자동차시 3 철도 1 2 자동차시 프를 제 한 철도 12 법으 12 법으 2 법으 2 법으 2 법으 2 법으 2 법으 3 법으 3 법으 3 법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변우시 나 시 나무시 구 남 한 경우 가 남 한 경우 1 출 장 기 시 출 장 기 시 기 시 기 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장등사시 : 1 IE : 1 IV : 1	나 속호시	용무시 행산시 행천 기타지역으로 당의 인 역 기타지역으로 당의 인 역 기타지역으로 지금 이어, 당해 이어, 당해 인지교통비 현지교통비 현지교통비 의 요금 실비기 원 요금을	이리시 군산 시 마산시 L 한다 로급을 기준으 한다. 철도운입구분 문급에 해당하 건녕 의 5말	3.	월모운 1 문실운	일구분표 가리키!	중 1중· 4. 당대	3은 4: 철도순	14± 4 17±3	인요국 시, 34 [총 제송	당은 시 할 수 없	마음호 보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증계 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통령 노태우엔 1992년 9월17일

로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이동호 내무박자과 이동호

⊙대통령령 제13,727호 지방자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지빵외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를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增基 5]

지방의학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제15조 관련)

(단위 : 위)

		_					12	271	
1	지급 기타면	본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	숙박비	식비	식탁료
Ŀ	A /	운업	운입	운임	운 임	교통비 (1일당)	(1야당)	(1일당)	i (1야당)
W	의 광· 부의장	1등급	2등 경역	경맥	경액		17,000		800
ç	의 원	1등급	2동 경역	경액	경력	5,000	17,000	11,000	,800
マ・ル・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장맥	정맥	정액	5,000	17,000	11,000	800
RAT-	의 원	2등급	2등 정예	정맥	경맥	4,500	14,000	10,500	800

비고: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 하여야 한다.

- 2. 외희소제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격발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한다.
-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세마율호 특실, 2등 급은 세마율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척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 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 급한다.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理由 및 主要得予 關內族費規程의 改正(1992.2.29, 大統領令 第13600號) 으로 소書員族資定額이 平均 10퍼센트 引上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地方觀會議員의 被實定額을 平均 10퍼센트 引上하여 族費支給의 哲平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체 제공>